

한 국 정 신 대 문 제 대 책 협 의 회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307-A
전화 763-9633/4 전송 763-9634

정대협 : 제 93 - 56호 1993년 8월 26일
수 신 : 언론사 국제부/여성부 기자
제 목 : 유엔에서 일본에 의한 정신대문제에 대해 조사판 결정
보도의 건

8월 2일 부터 2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인권소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정신대문제가 제기되었고, 본 협의회에서는 신혜수 국제협력위원장이 참석하셨습니다. 특별히 본 협의회에서 계속해서 유엔 인권소위원회에 요청해온 "정신대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판을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파견" 건이 이번 회기에서 투표에 부쳐져서 제네바 현지시간 25일 오후 6시 40분, 한국시간으로 오늘(26일) 새벽 1시 40분에 통과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일은 그동안 1년 반에 걸쳐 꾸준히 유엔 인권위원회 회의에 참가하여 유엔이 진상을 조사해 줄것을 반복해서 요청해온 본 협의회 활동이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이 결정은 '정신대 문제에 대해 유엔 차원에서 공식적인 조사가 처음으로 행해지는 것으로서 일본에 의한 성노예 범죄가 역사적으로 기록되는 것이며, 앞으로 배상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결정에 대해 이미 일본언론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보도할 예정이고, 외국 언론들도 취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본 협의회에서는 귀 언론사에서도 이 문제를 중요한 기사로 취급해 주셔서 이 소식을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일본정부에게도 압력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공 동 대 표 이효재, 윤정옥, 김희원
(직인생략)

※ 별첨: 보도자료, 결정의 의미, 유엔결의안

별첨1 (보도자료-정대협 제공)

유엔에서 일본에 의한 "정신대" 조사결정
- 내전을 포함한 전쟁중의 노예제 및 노예제와 유사한 행위
에 대한 특별보고관 임명 -

오늘 유엔 '소수민족 차별방지 및 보호 소위원회 (이하 인권소위)' 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E/CN.4/Sub.2/1993/L.12), 내전을 포함하여 전쟁중에 가해지는 조직적 강간, 성노예 및 노예제와 유사한 행위등의 상태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담당할 특별보고관 (Special Rapporteur)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이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린다 차베즈 (Linda Chavez)씨는 인권소위의 위원이며, 작가이고, TV 논평가인 동시에 The Center for the New American Community의 소장이다.

그동안 많은 민간단체들, 즉 World Council of Churches (세계교회협의회),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세계법률가협회), Liberation,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mocratic Lawyers, International Educational Development, 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등을 비롯해서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필리핀 정신대대책협의회, 조선인 강제연행진상조사단등의 단체들이 1992년 2월 이후 유엔에 정신대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의 중대한 결정을 대단히 환영한다.

특별보고관의 중요임무중의 하나는 제2차 세계대전중의 일본에 의한 성노예에 관해 관련사실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분석과 함께 결론과 권고사항들을 제시하는 일이다. 1992년 8월에 인권소위는, 전쟁중 강제매출에 동원된 여성들, 즉 일본황군의 정신대가 된 아시아-주로 한국-의 여성들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중대한 인권및 기본적 자유의 침해의 피해자를 위한 원상회복, 배상 및 재환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이하 배상문제 특별보고관)에게 주도록 사무총장에게 요청하였다 (결의안 전문 세번째 문단 참조). 1993년 5월에 '현대형노예제 실무회의'는, 전쟁중의 여성의 성적 착취 및 기타 형태의 강제노동, 즉 2차대전중 일본에 의한 '정신대'와 강제노동자로 일했던 남녀의 상황에 대해 그 정보를 '인권소위'와 '배상문제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하도록 결정하였다 (결의문 전문 5번째 문단, 현대형노예제 실무회의 보고서 (E/CN.4/Sub.2/1993/30)의 문단 48-49, 80-87 및 p. 40의 기타사항에 대한 권고를 참조할 것.) 새로 임명된 '노예제 및 노예제와 유사한 행위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배상문제 특별보고관'이 접수한 문서, 즉 주로 일본에 의한 '정신대'와 강제노동자들의 상태에 관한 문서들을 참고로 하게 된다 (결의안 본문 두번째 문단의 초두 참조).

결과적으로, '노예제 및 유사노예제 행위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할 연구에는 제 2차 세계대전중 일본에 의한 아시아 "정신대" 여성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의 강제노동자들까지 포함할 수 있게 된다.

이번의 결정으로 일본은 역사상 처음으로 유엔의 인권기구에 의해 공개적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일본정부가 '현대형노예제 실무회의'에서 "유엔은 유엔이 창설되기 이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 논의할 수 없으며, 모든 배상은 북한을 제외하고는 아시아 피해국들과 일본사이에 체결된 조약에 의해 해결되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인권소위'가 이번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관련 민간단체와 정부들이 새로 임명된 특별보고관에게 협력해 주기를 희망한다.

더 나아가 또 한가지 중요하게 유의할 점은, 특별보고관이 '구 유고영토내의 인권상황에 관한 인권위원회의 특별보고관'이 접수한 문서도 참고하도록 되었다는 것이다 (결의안 본문 2번째 문단의 두번째 부분). 이로써 특별보고관은 제2차 세계대전중의 노예제 및 노예제와 유사한 행위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전중 여성에게 가해지는 학대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과거와 현재의 피해자의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앞으로 전쟁이나 내전시의 노예제와 유사노예제 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별첨2(결정의 의미-정대협 제공)

정신대문제와 관련한 유엔 인권소위원회의 결정의 의미

1. 지금까지 1년 반에 걸쳐 유엔을 중심으로 한 정대협 활동의 결과이다.

그동안 정대협의 대 유엔 활동:

- 1) 1992년 2월에 처음으로 유엔에 정신대 문제를 알리는 편지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
- 2) 1992년 8월의 인권소위에 4명 참석
- 제네바; 이효재, 신혜수, 정진성, 황금주할머니.
- 3) 1993년 2월의 인권위원회 참석--제네바; 신혜수
- 4) 1993년 3월의 세계인권대회 아시아 지역 준비회의 참석
- 방콕; 이효재, 정진성
- 5) 1993년 5월의 현대형노예제 실무회의 참석
- 제네바; 신혜수, 강덕경할머니

6) 1993년 6월의 세계인권대회 참석

- 비엔나: 이효재, 신혜수, 정진성, 윤미향, 김복동 할머니

7) 1993년 8월의 인권소위에 참석

- 제네바: 신혜수

위와 같이 그동안 1년 반에 걸쳐 꾸준히 유엔차원에서 진상을 조사해 줄 것을 반복해서 요청하였다. 이번의 인권소위의 결정은 이러한 정대협 활동의 성과이다.

2. 이번에 임명되는 특별보고관은, 내전을 포함하여 전쟁중에 여성에게 가해지는 조직적 강간, 성노예등의 인권유린에 대해 조사연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법률적 분석, 결론, 권고사항등까지 포함하여 그 연구 결과가 94년 4월에 개최될 '현대형 노예제 실무회의' (94. 4. 18-27)에 보고될 것이다. 이 특별보고관은 미국인 여성 전문위원인 Ms. Linda Chavez가 임명되었다.

(Ms. Linda Chavez 약력:

현재: 유엔인권소위 전문위원,

The Center for the New American Community 소장으로서 문필가로서 인종문제에 관한 책을 냈음.

미국 공영 텔레비전 방송 PBS에 주 1회 프로그램 담당.

과거: 레이건 행정부에서 백악관 공보담당관 역임.

메릴랜드 주 상원위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함.)

(이 경우 공식적으로는 내년 초에 개최될 인권위원회 (1994. 1. 31 - 3. 11)의 형식적인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유엔 인권소위의 판행에 따르면 이럴 경우 즉시 조사연구에 착수하게 된다.)

3. 한국등 아시아 관련국 정부들이 특별보고관 Ms. Linda Chavez의 조사연구를 돕기 위해 그를 초청해야 할 것이다.
4. 이번 인권소위의 결정으로 정신대문제에 관해 유엔 차원에서 공식적인 조사가 처음으로 행해지는 것으로서 일본에 의한 성노예 범죄가 역사적으로 기록되는 것이다.

* 기타 문의사항은 정대협 사무국에 연락해 주십시오.

별첨 3(유엔 인권소위 결의안)

유엔 인권소위 결의안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유엔 인권위원회 소수민족 차별방지및 보호 소위원회

제45차 회의

의제 15

1993년 8월 25일

현대형 노예제

Ms. Attah, Mr. Bossuyt, Mr. Boutkevitch, Mrs. Daes, Mr. Eide,

Mr. Hatano, Ms. Ksentini, Mrs. Palley, Ms. Warzazi and Mr. Yimer:

결의문

1993/... 전쟁중의 노예제및 유사 노예제 행위

소수민족 차별방지 및 보호 소위원회는,

비엔나선언과 행동계획, 특히 제2부 B항의 문단 38에서, 무장충돌의 상황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인권유린, 특히 살해, 조직적 강간, 성노예 및 강제임신등은 특별히 효과적인 대응을 필요로 한다고 세계인권대회가 강조한 것을 지참삼고,

여성과 어린이의 강간, 학대등 가중한 행동을 강력히 비난한 인권위원회의

1993년 2월 23일의 결의안 1993/8과, 전투상황을 포함한 모든 상황에서 특히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인권유린을 비난한 동위원회의 1993년 3월 8일의 결의안 1993/46을 기억하며,

동 소위원회가 1992년 8월 14일의 결의안 1992/2 문단 18에서 전쟁중에 매춘을 강요당한 여성들의 상황에 대한 정보에 관해 사무총장에게 요청한 것을 상기하고,

현대형 노예제 실무회의 제18차회의의 보고서 (E/CN.4. Sub. 2/1993/30)를 환영하며,

현대형 노예제 실무회의가, 전쟁중의 여성의 성적 착취 및 타 형태의 강제노동에 관해 소위원회에 넘긴 정보에 유의하면서,

1. Ms. Linda Chavez를 특별보고관 (Special Rapporteur)으로 하여, 내전을 포함한 전쟁중에 일어나는 조직적 강간, 성노예 및 노예제와 유사한 행위 등의 상황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도록 맡길 것을 결정한다.
2. 이 특별보고관이 일차 보고서를 제 46차 인권소위원회 (1994년) 에, 그리고 최종보고서를 제 47차 인권소위원회 (1995년) 에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3. 이 특별보고관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심각한 침해의 희생자를 위한 원상회복, 배상 및 자활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및 '구 유고슬라비아 영토 내의 인권상황에 대한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이 접수한 문서를 참고하여, 관련된 사실들, 법률적 분석, 결론, 요망사항들을 연구에 포함시키도록 초대한다.
4. 내전을 포함한 전쟁중의 조직적 강간, 성 노예 및 노예제와 유사한 행위에 대한 특별보고관에게 연구 결과를 제 19차 현대형노예제 실무회의 (1994년) 에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5. 인권위원회가 다음의 결의문 초안을 채택해 주기를 건의한다.
"인권위원회는 소수민족차별방지 및 보호소위원회의 1993년 8월 ..일의 결의안 1993/.. 에 유의해서, Ms. Linda Chavez를 특별보고관으로 임명하여, 내전을 포함한 전쟁중의 조직적 강간, 성 노예 및 노예제와 유사한 행위의 상황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여 그 연구의 결과를 제 19차 현대형 노예제 실무회의에 제출하기로 결정한 것을 승인한다."
6. 경제사회이사회가 다음의 결의문 초안을 채택해 주기를 건의한다.
"경제사회이사회는 인권위원회의 1994년 ...의 결의안 1994/...에 유의하면서, Ms. Linda Chavez를 전쟁중의 현대형노예제 및 노예제 행위, 특히 내전을 포함하여 전쟁중에 자행되는 조직적 강간, 성적 노예 및 노예제와 같은 행위에 관한 특별보고관으로 2년간 임명하기로 한 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승인하고, 이 특별보고관이 연구를 완수하는데 필요한 모든 도움을 제공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